

2026 유천초 동아리(연극 및 뮤지컬) 강사 채용 공고

대구유천초등학교 동아리 강사(연극 및 뮤지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동아리 및 인원: 1명
2. 채용 기간 및 조건
 - 가. 근무 기간: 2026년 9월 2주 ~ 10월 5주
 - 나. 운영 시수: 연극(뮤지컬) 70시간, 각 반 당 7시간 (5학년 5반(연극), 6학년 5반(뮤지컬))
 - 다. 운영 시간: 창체 동아리 시간
※9월 7일~10월 27일 사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요일은 조절 가능합니다.
 - 라. 상기 일정은 학교 행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 강사료: 1시간 기준 30,000원
3. 지원 자격: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 가.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자
 - 나. 각 과목 지도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다.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라. 우리 학교 교직원과 친·인척(4촌 이내) 관련이 없는 자

4. 제출서류

지원 시	계약 시
가. 지원서 1부(사진 첨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1부 다. 관련 자격증(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학생지도 관련 상장(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가. 주민등록등(초)본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1년간 유효) -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다. 통장 사본 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보 안 서약서, 청렴 이행 서약서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9월 2일(수))로부터 14일 이내 요청 시 반환하며 이후 미반
환된서류는 파기함

※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함

5.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8. 24.(월) ~ 8.26(수) 12:00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8. 28.(금) 12:00
까지 추가모집)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문의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며 서류 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접수처: 우리 학교 교무실로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다. 채용 방법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31.(월) 10:00 이후,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2차 개별 면접: 2026. 9. 1.(화) 14:00, 회의실(차후 자세히 안내, 면접 시간 조정가능)

-2차 합격자(최종) 발표: 2026. 9. 2.(수),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라.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유천초등학교 (☎234-4922, ☎234-4835)로 문의 바람
(평일 오전 9시~16시 사이 문의)

2026. 8. 19.

대 구 유 천 초 등 학 교 장

동아리(연극 및 뮤지컬) 강사 지원서

접수번호					사 진 (3cm×4cm)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현주소					
연 락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채용 부문	연극 및 뮤지컬		
소지자격 (교원자격 포함)	취득 년월일	자격증 종류			발행처
	. . .				
	. . .				
	. . .				
	. . .				
학력 및 경 력	. . .	고등학교 졸업			
	. . .	대학교	대학	과 졸업	
	. . .				
수상	수상명	내용	수상일자	기관	

내역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붙임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유천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